

대검찰청 2019년도 제2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

대검찰청 2019년도 제2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9년 2월 18일

검찰총장

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채용분야	직급	채용인원	담당업무	근무예정지
공업직	공업주사보	1명	기계시설 관리 및 냉·난방 운용	서울북부지방검찰청

2. 법률적 근거

- 국가공무원법
- 검찰청법
- 공무원임용령
- 공무원임용시험령
- 공무원임용규칙
-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

3. 응시 자격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)
- 20세 이상인 자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
●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

채용분야	응시자격 요건
공업7급	<p>자격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사 : 기계, 공조냉동기계 직무관련분야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장 : 에너지관리 직무관련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 후,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사 : 일반기계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 직무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,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기사 :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

[서류전형 우대사항 등]

-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(연차별 차등 배점)
- ② 관련분야 직무성과(건당 배점) : 논문·학술발표·연구·특허기술개발·수상실적
 - ※ 관련분야 : 기계시설 관리 및 냉·난방 운용
 - ※ 근무경력,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만 평가
- ③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
 - ※ 관련학과 : 기계공학, 산업공학 등 관련계통
- ④ 워드(종전1급)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⑤ 안전관리, 전기 관련 아래 자격증 소지자

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소방, 화공, 가스
 기능장 : 위험물, 가스, 전기
 기사 : 전기, 전기공사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, 화공, 가스, 산업안전
 산업기사 : 전기, 전기공사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, 위험물, 산업안전, 가스

[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]

-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
- 응시요건 상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
-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-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
-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(년월일 단위), 직위(직급),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(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 경력 산정)
-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 등 확인 자료 제출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,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
-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, 추후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 절차 있음(면접 시 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제출)

4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

【 평정요소 】

① 자기소개서	② 직무수행계획서	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
④ 관련분야 근무경력	⑤ 직무성과	⑥ 우대사항

- 관련분야 근무경력, 연구실적, 논문, 학술발표, 특허·기술개발, 수상실적,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, 워드(중전1급)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소지자, 자격증 소지자(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소방, 화공, 가스, 위험물, 전기, 전기공사, 승강기, 전기분야 소방설비, 산업안전)

• 관련학과 : 기계공학, 산업공학 등 관련계통

• 관련분야 : 기계시설 관리 및 냉·난방 운용

※ 근무경력,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만 평가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
-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'상', '중', '하' 평정

【 평정요소 】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'상'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)

【 불합격 기준 】

1.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'하' 평정
2.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평정

※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,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
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

5. 시험 일정

채용분야	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전형	최종합격자 발표
공업7급	'19. 2. 18.(월) ~ '19. 3. 4.(월)	'19. 3. 14.(목)	'19. 3. 21.(목)	'19. 4. 1.(월)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·장소,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

- 대검찰청(<http://www.spo.go.kr>) 알림마당(고시·공고)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(<http://www.gojobs.go.kr>)의 '채용정보'에서 내려 받아 사용

- 접수기간 : 2019. 2. 18.(월) ~ 2019. 3. 4.(금)

- 접수처 : 대검찰청 운영지원과

- (06590)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(서초동)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

- 접수방법

-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(인터넷 불가)

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 내에만 접수 가능

※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

※ 서류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'공업주사보 응시원서 재중' 표기

※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(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)

-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(별첨 가능) ※ 공업주사보 7,000원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(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)

7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1호) 1부
- 이력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
-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
- 직무수행계획(별지서식 제3호) 1부
-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
-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4호)
-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, 학위 수여 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8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·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

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·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 정지 또는 무효, 합격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※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신원조사,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(☎ 02-3480-2037, 채용 담당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참여민원 -신고센터 -인사신문고 -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